

업 무 협 약 서

한국전력공사(이하 “한전”)와 인천항만공사(이하 “IPA”)은 에너지신사업 활성화와 신규 사업모델의 개발 및 보급·확산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에너지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양 기관의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IPA의 소유·관리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
단, 부지의 사용·대부 및 사업자 선정은 관계 법령 및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별도로 결정한다.
2.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관련 지자체 등 대·내외 홍보
(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름)
3. ESS 분야 신(新)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정보·기술의 제공 및 제도개선

제3조(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) ① 본 협약은 각 협약 당사자 모두 서명을 완료한 날로부터 발효되며, 제4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인 의무나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.

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전에 협약 당사자간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비밀유지) ① 협약 당사자는 본 업무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중 상호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를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한다. 단, 정보공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감독기관·상급기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②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에도 효력을 가진다.

제5조(기타) ① 본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각 기관의 협약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
각 당사자는 상기와 같이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본 협약서를 체결하며,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09월 08일



인천항만공사 사장
이 경 규





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장
이 상 원

